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이유

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직접청구 및 가불금 제도, 정부보장사업 등을 운영 중이나,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대방 개인정보 등도 청구서에 기입해야 하는 등 청구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하고자함

또한,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과산 등으로 가불금 환수 곤란 시 정부가 보상 중이나, 환수가 불가함에도 보상 범위에 반영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

한편, 정부보장사업은 보상접수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상설 보상조직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, 대부분의 보상절차가 전화, 온라인(이메일, 홈페이지), 팩스 등으로 진행되어 지역별 조직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위탁조건을 변경하고,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직접청구 및 가불금,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요건 완화(안 제7조 및 제20조 개정)

-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주소 등 제출하기 힘든 항목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 완화

나.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요건 완화(안 제10조)

- 보험회사등이 환수할 수 없는 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요건을 완화

다. 분담금 관련 권리구제절차 마련(안 제32조의3)

- 분담금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, 정부의 결과 통보, 보험회사등의 분담금 반환 및 정부에 대한 반환청구권 대위행사권 등 마련

라.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요건 변경(안 제33조의3)

- 분담금 관리기관 변경사항(보험 관련 단체 →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, '22~)을 반영하여 채권정리위원회 위원자격 변경

마. 뺑소니사고 신고 포상금 관련규정 삭제(안 제33조의17, 제35조의4)

- 자배법 개정('21.12)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삭제되었으므로, 이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 삭제

바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 마련(안 제33조의19)

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목적, 명칭, 사무소소재지 등 주요사항 등 등기사항을 마련

사. 정부보장사업 보상조직 설치요건 완화(안 제35조)

-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완화하여 변경(시·도, 특별자치도별 상설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→ 상설 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(사고 당사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 사고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도 제출하여야 한다)

3. 자동차사고 상대방의 성명

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”를 “제1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2조에 따른 경찰서 또는 동법 제43조에 따른 지구대·파출소·출장소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

⑤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이나 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임의변제, 강제집행절차 종료 등으로 더 이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

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(사고 당사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 사고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도 제출하여야 한다)

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피해자 및 가해자”를 “자동차사고 상대방”으로, “성명 및 주소”를 “성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
3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29조의3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

⑩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의 서류를 자동차사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2조에 따른 경찰서 또는 동법 제43조에 따른 지구대·파출소·출장소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피해자는 그 지급 청구서를 각각 제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제3호의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제32조의2제2항”을 “제32조의2제2항, 제32조의3”으로 한다.

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3(이의신청 등)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등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의 청구에 따라 잔여 보험기간(제2호의 경우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된 기간)에 해당하는 금액의 잔여 분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.

1.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와 보험회사등이 체결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

2.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이 통보된 경우

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잔여 분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한도에서 정부에 대한 납부 의무자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.

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“보험 관련 단체”를 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17을 삭제한다.

제33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19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)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원장의 성명과 주소
5. 이사의 성명과 주소
6. 자산에 관한 사항

7. 출연의 방법

제35조제1항제2호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

이상의 상설”을 “상설”로 한다.

제35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(이하 “보험금등”이라 한다)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(이하 “보험회사등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u>1.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</u> 2. (생략) <u>3.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</u> 4. 5. (생략) <u>6. 보험가입자(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성명 및 주소</u> 7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	제7조(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(사고당사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 사고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도 제출하여야 한다)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자동차사고 상대방의 성명</u> 4.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7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
	<u>사고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도 제출하여야 한다)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피해자 및 가해자(법 제30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성명 및 주소</u>	3. <u>자동차사고 상대방</u> ----- ----- ----- <u>성명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.</u>	2. <u>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</u>
<u><신 설></u>	3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 29조의3에 따른 교통사고사실 확인원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⑩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 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2항제3호의 서류를 자동차사고 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 「경찰청

	<u>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2조에 따른 경찰서 또는 동법 제43조 에 따른 지구대·파출소·출장 소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로 갈 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피 해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제3호의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31조(분담금액) ① 법 제37조제 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 토교통부장관(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·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이나 보험 관련 단체 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 제32조 제1항, 제32조의2제2항 및 제33 조에서 같다)에게 납부해야 하 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 료(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 제분담금을 말한다. 이하 “책임 보험료등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 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	제31조(분담금액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제32조의2제2항, 제32조의 3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	-----.		의무자와 보험회사등이 체결 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
② 삭 제			2.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 게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결 정이 통보된 경우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잔여 분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한도에서 정부에 대한 납부 의무자의 반환청구권 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.
<신 설>	제32조의3(이의신청 등) ① 법 제 3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 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	제33조의3(채권정리위원회의 구 성 등) ① (생 략)	제33조의3(채권정리위원회의 구 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	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	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, 위원장 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 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 험회사등은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 무자의 청구에 따라 잔여 보험 기간(제2호의 경우 분담금을 납 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된 기 간)에 해당하는 금액의 잔여 분 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.	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	1.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납부	2.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·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 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(이하 “분담금관리자”라 한다)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(이하	2. ----- ----- ----- ----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----- ----- -----

“지명위원”이라 한다) 1명

3. (생략)

③ ~ ⑥ (생략)

제33조의17(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”이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를 말한다.

② 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는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

1.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
2. 신고 또는 고발의 내용
3. 피해자의 인적사항
4. 피해자의 피해 정도
5. 그 밖에 검거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

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
2.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
1. 피해자가 사망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: 100만원
2. 피해자가 부상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: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

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.

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
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·
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
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
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제33조의19(자동차손해배상강진
원 등기사항) 법 제39조의3제1
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
상강진원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
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원장의 성명과 주소

제35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,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2.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

② ~ ⑨ (생략)

제35조의4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~ ③ (생략)

5. 이사의 성명과 주소

6. 자산에 관한 사항

7. 출연의 방법

제35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상설 -----
-
-
-
-
-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4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
④ <u>국토교통부장관(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⑤ ~ ⑦ (생략)	<u><삭 제></u>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